

의안번호	제 43 호
의결연월일	2007. 11. 23. (제 141 회)

의결사항

##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총무위원장
제출연월일	2007. 11. 16.

#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 43 호
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7. 11. 16.  
제 출 자 : 총무위원장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(2007. 5. 11)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가. 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54조 → 제62조(안 제1조)

나.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의 구성

1) oo의 규정에 의하여 → oo에 따라(안 제1조·제7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54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신구조문대비표 : 별첨

## 거창군의회 조례 제 호

###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62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잔임기간으로”를 “남은 임기로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<u>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</u> 거창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제62조에 따라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5조(상임위원의 임기) ① ~ ② (생략) 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<u>잔 임기간으로</u> 한다.</p>	<p>제5조(상임위원의 임기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남은 임기로</u> -----</p>
<p>제7조(특별위원회) ① (생략) ②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</u>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③ ~ ⑥ (생략)</p>	<p>제7조(특별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제1항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
## 관 계 법 령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62조 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